

###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화학물질등록평가법 )

[시행 2021. 10. 14.] [법률 제18034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]



환경부(화학물질정책과) 044-201-6783

**제10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)**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(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0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(이하 “등록유예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0.>

1.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, 돌연변이,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1년 12월 31일
2.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4년 12월 31일
3.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20.>

1. 화학물질의 명칭
  2.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
  3.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
  4. 화학물질의 용도
  5.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[제목개정 2018. 3. 20.]

**부칙** <제18034호, 2021. 4. 13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)**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)

[시행 2021. 10. 14.] [대통령령 제32061호, 2021. 10. 14., 일부개정]



**제10조(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)**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7년 12월 31일
2.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30년 12월 31일

[전문개정 2018. 12. 24.]

**부칙** <제32061호, 2021. 10. 14.>
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,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